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7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30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30.(목)	담당부서	자원안보정책과
담당과장	김호성 과장(044-203-5140)	담 당 자	이동진 주무관(044-203-5252)

산업부, 더위·추위 민감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

-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, 지원대상을 주거·교육급여까지 확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**에너지바우처**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·취약계층에 전기·가스·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□ 에너지바우처 **지원대상**은 현행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·추위민감계층(노인, 장애인, 질환자 등)에서 '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**주거·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·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**했으며,

○ 이에 따라 **30만여 주거·교육급여 수급세대**가 **추가지원 혜택**을 받게 됨에 따라 올해 118만여 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지원대상	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·추위민감계층 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)	생계·의료·**주거·교육**급여 수급세대 中 더위·추위민감계층 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)
지원세대 수	87.8만	**117.6만(+29.8만)**

□ 또한, 에너지바우처 **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**하였으며, 세대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원)

구 분		1인 세대		2인 세대		3인 세대		4인이상 세대	
총계	하절기	137,200	29,600	189,500	44,200	258,900	65,500	347,000	93,500
	동절기		107,600		145,300		193,400		253,500

□ 신규 지원대상인 **주거·교육급여 수급대상자**는 **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**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

○ 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**7월 1일부터 주거·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바우처 금액을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**이며,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.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**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 콜센터**(☎1600-3190) 및 **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**(www.energyv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이동진 주무관(☎ 044-203-525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('22년 추경 반영)

□ **(개 요)**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□ **(지원대상)** 「**소득기준**」과 「**세대원특성기준**」을 **모두 충족**하는 세대

○ **소득기준**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**"생계·의료" 및 "주거·교육('22년 한시)" 급여 수급자**

○ **세대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**이 다음 **어느 하나에 해당**

- 노인 (주민등록기준 1957.12.31 이전 출생자)
- 영유아 (주민등록기준 2016. 1. 1 이후 출생자)
- 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- 임산부 (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)
- 한부모가족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)
- 소년소녀가정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□ **(지원금액)**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('22년 한시 인상)

구 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	내 용
하절기	29,600원	44,200원	65,500원	93,500원	· 요금차감(전기)
동절기	107,600원	145,300원	193,400원	253,500원	· 요금차감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) · 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총 금액	137,200원	189,500원	258,900원	347,000원	·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* 동절기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)
**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사용 가능

□ **(지원절차)** 신청·접수(읍·면·동) → 선정·결정통지(시·군·구) → 바우처 발급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·정산·모니터링(전담기관)

*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 필요
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·발급

□ **(신청기간)** '22. 5.25. ~ 12.30.

□ **(사용기간)** '22. 7. 1. ~ 9.30.(하절기바우처), '22.10.12. ~ '23. 4.30.(동절기바우처)

□ **(전담기관)** 한국에너지공단

붙임 2 | **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('22년 추경 반영)**

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

에너지 바우처

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한국에너지공단
www.energy.or.kr



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거주지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*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·면·동에 사전 문의

신청기간

2022년 5월 25일 ~ 12월 30일

신청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"생계, 의료" 및 "주거, 교육('22년 한시)"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중증 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이 있는 세대

바우처 금액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여름	29,600원	44,200원	65,500원	93,500원
겨울	107,600원	145,300원	193,400원	253,500원
총 금액	137,200원	189,500원	258,900원	347,000원

*위 금액은 2022년도 총 **지원금액**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*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**한시적으로 인상**
*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*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사용안내

구분	사용기간	사용방법
여름 바우처	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	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	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	요금차감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) 국민행복카드 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
*요금차감은 '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**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**된 경우에 한해 지원
*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**결제완료** 필요

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☎1600-3190
홈페이지 www.energyv.or.kr

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